54.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신청

□ 민원개요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주민복지과	처리기간	10일	수수료
근거법령	의료급여법 제 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			없음

□ 구비서류

구비서류명	비고
· 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, 처방 관련 검사 서류	

□ 민원처리 흐름도

○ 장애인보조기기 처방(수급권자) → 보조기기 급여 신청(읍면) → 수급자격 판단(주민복지과) →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(읍면) → 구입비용 지급(주민복지과) → 사후점검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	930-3284	